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 확대 〉

- 한민수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11827호)
- 이재관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11914호)
- 조인철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12577호)
- 김우영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13614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목 차

【한민수의원안】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재관의원안】

I. 제안경위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조인철의원안】

I. 제안경위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김우영의원안】

I. 제안경위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III. 검토의견	6
-----------------	---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 확대(안 제22조제4항)	6
---	---

【한민수의원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5. 7. 29.

다. 회 부 일 : 2025.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가해자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방 범죄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로 유튜브나 SNS에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불법 정보를 이용자들로부터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
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
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이재관의원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재관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5. 8. 1.

다. 회 부 일 : 2025.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서면의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조인철의원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9. 1.

다. 회 부 일 : 2025.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총기 제조법과 작동 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총기사고로 이 서면의결을 할 수 없어 해당 정보의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도박·사행성 정보 등 다른 유형의 명백한 불법정보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김우영의원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우영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5.

다. 회 부 일 : 2025. 10.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 확대(안 제22조제4항)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의 회의 중 서면의결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한민수의원안은 ①마약류 거래정보, ②자살유발정보, ③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④장기등의 매매 정보, ⑤개인정보 매매 정보, ⑥총포 및 화약류 제조정보를 추가하려고 함.
- 이재관의원안은 ①마약류 거래정보, ②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③총포 및 화약류 제조정보를 추가하려고 함.
- 조인철의원안은 ①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②총포 및 화약류 제조정보를 추가하려고 함.
- 김우영의원안은 ①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②마약류 정보, ③저작권 침해정보를 추가하려고 함.

현 행	한민수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조인철의원안	김우영의원안
제22조(회의 등) ① ~ ③ (생략)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보로부터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보로부터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보로부터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보로부터

현 행	한민수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조인철의원안	김우영의원안
다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 ----- ----- ----- ----- ----- ----- ----- ----- ----- ----- ----- ----- ----- -----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 ----- ----- ----- ----- ----- ----- ----- ----- ----- ----- ----- ----- ----- -----	신속히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 ----- ----- ----- ----- ----- ----- ----- ----- ----- ----- ----- ----- ----- -----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신 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	2.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또는	2.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현 행	한민수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조인철의원안	김우영의원안
	<u>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 정보 4.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u>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3.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에	<u>「국민체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u>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u>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정보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현 행	한민수의원안	이재관의원안	조인철의원안	김우영의원안
	5. 「<u>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 「<u>개인정보 보호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제8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u>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방미심위의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¹⁾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같은 조 제4항²⁾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³⁾에 따른 촬영물·복제물 등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해당 사유에 마약류 거래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 장기매매, 개인정보매매, 총포 제조정보, 저작권 침해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별 추가하려는 사항 및 관련해 2022년부터 2024년 시정요구 건수는 다음과 같음.

-
- 1) 법 제23조(회의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법 제23조(회의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개정안별 서면의결 추가 대상 >

구분	마약류 거래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총포 및 화약류 제조정보	그 외
한민수의원안	✓	✓	✓	자살유발정보 장기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이재관의원안	✓	✓	✓	-
조인철의원안		✓	✓	-
김우영의원안	✓	✓		저작권 침해정보

< 연도별 불법정보별 시정요구 현황 >

위반내용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사기	152	153	201	506
도박	53,177	55,610	85,500	194,287
개인정보 매매	3,624	3,267	3,632	10,523
마약류 매매	26,013	30,503	31,434	87,950
자살 유발정보	1,046	466	446	1,958
장기매매	482	434	151	1,067
총포 및 화약류 제조	5,610	1,785	2,447	9,842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기존에 방미심위는 전체회의는 2주에 1회, 법 제23조제5항⁴⁾에 따라 구성된 4개의 소위원회 중 방송심의소위와 광고심의소위는 주 1회 대면 회의, 통신심의소위는 주 2회 대면 회의, 디지털범죄심의소위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매일 서면의결(전자심의)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음.

4) 법 제23조(회의 등)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통신심의를 통한 정보의 차단이나 삭제와 같은 심의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 것은 심의위원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함으로,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그러나 성폭력 등의 촬영물·복제물의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며 즉각적인 구제가 필요한바,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서면의결 대상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면회의를 통하여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그 확산 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방미심위가 현재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대면회의를 하는 현행법의 취지는, 안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2025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안(의안번호 2208485)이 제안되었고,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과 부결(2025.4.17.)된 바 있음.⁵⁾

< 기존 대안(2208485)에 포함되었던 서면의결 대상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다만, 방미통위는 저작권 침해정보의 경우 문체부와의 협의 결과

5) 동 대안의 경우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심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서면심의 대상을 해외 저작권 침해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합의제 기관의 원칙적인 의결방식이 아닌 예외적으로 서면의결을 허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면의결 대상 확대 문제는 서면의결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과 현실적인 가능성, 방미심위의 설치목적과 의사결정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임.

○ 종합해보면, 방미심위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대면심의를 통해 위원 간 의견교환을 통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하는 황운하의원안(의안번호 2210744)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으로, 이와 병합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